

1. 개정이유

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을 내용하는 「학교보건법」이 개정(법률 제18640호, 2021. 12. 28. 공포, 2022. 6. 29. 시행)됨에 따라,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시기 증회(안 별표6)
학교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중 정기점검을 현행 매학년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매학년 2회 이상으로 증회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기관과 협의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교육부령 제 호

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6의 정기점검의 점검시기란 기호(○)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○매 학년 : 2회 이상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[별표6]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및 시기		[별표6]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및 시기		
점검종류	점검시기	점검종류	점검시기	
정기점검	○ 매학년 : <u>1회 이상</u> . (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의 경우에는 상반기 •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으로 한다.).	정기점검	○ 매학년 : <u>2회 이상</u> . -----	
	다만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점검횟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.		-----	

